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5년 09월 30일

우정읍장 인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강 *욱	강 *욱 1986-11-03	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화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5-09-16